M - 132 - 2012

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 남 규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2001년 5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6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6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9년 8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ILO 산업안전모델 코드 제170조 Screw conveyor
 - KOSHA CODE M-07-2008 컨베이어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3조 (낙하물 에 의한 위험 방지)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)의 규정에 따라 분체 운반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분체의 제조 또는 원료혼합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 투입구 및 점검구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자동선반"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운동 및 기능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반을 말한다.
 - (나) "수동선반"이라 함은 공구이송 및 공작물 파지장치가 수동으로 조작되는 선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모방장치 등을 포함하다.
 - (다) "공작영역"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접근하는 점을 포함하며 터릿선반에서와 같이 작업이이루어지지 않는 공구가 있는 부위는 제외된다.
 - (라) "고정가드"라 함은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

M - 132 - 2012

제거 또는 개방할 수 없으며 운동부위가 없는 가드를 말한다.

- (마) "유지가드"라 함은 미닫이 또는 여닫이 형태로 중력이나 수동조작으로 확실하게 잠겨지며,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할 수 없는 가드를 말한다.
- (바) "탈착가드"라 함은 작업장 바닥이나 기계 위에 자유롭게 세워둘 수 있는 가드를 말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쉽게 제거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
- (사) "방책형가드"라 함은 위험지역에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분한 높이의 담장형 가드를 말한다.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스크루 컨베이어(Screw conveyor)"란 U자형의 트로프(Trough) 속에 나사모양의 날개를 회전시키는 구조로서 트로프 속에 공급된 운반물의 자중과 날개회전에 의한 추진력을 이용하여 운반물이 날개의 면을 따라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송되는 기계를 말한다.
- (나) "트로프(Trough)"란 운반물을 담아두는 부분으로써, 나사모양의 날개를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U자형 케이싱을 말한다.
- (다) "연동장치(Interlock system)"란 기계의 각 작동부분 상호간을 전기적·기계적 또는 유공압을 연결하여 기계의 각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일반기준

스크루 컨베이어의 설계, 제작,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은 <u>안전보건기술</u> 지침 M-07-2008 「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」에 따른다.

5. 스크루 컨베이어 원료투입 작업의 방호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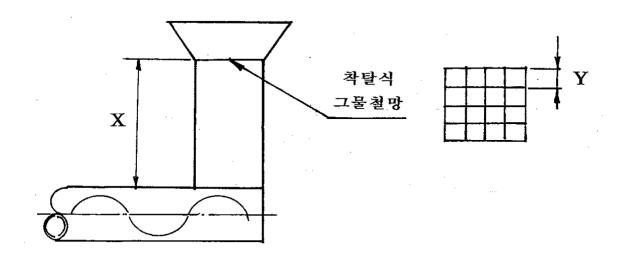
- 5.1 원료 투입구에 착탈식 그물철망 설치
 - (1) 원료 투입구에 착탈 가능한 구조의 그물철망을 설치하여 원료와 함께 유입되는 끈, 비닐, 천 등의 이물질이 그물철망에 걸리도록 하여 회전하는 스크루 부위에 접촉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, 안전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한다.
 - (2) 그물철망 설치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.
 - (가) 투입구의 직경이 감소되는 지점에 그물철망을 설치한다.
 - (나) 그물철망의 간격 산정은 <표 1> 및 <그림 1>을 참조하여 신체부위가 위험점에 닿지 않도록 결정한다.

<표 1> 안전거리 환산표

Y	X
Y≦6	X≥5
$6 < Y \leq 8$	X≥15
$8 < Y \le 10$	X≥25
$10 < Y \le 12$	X≥80
12 <y≤30< td=""><td>X≥120</td></y≤30<>	X≥120
$30 < Y \le 40$	X≥200
$40 < Y \le 120$	X≥850

주) X: 그물철망과 위험점(스크루)간의 안전거리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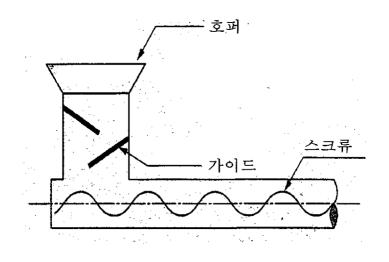
Y : 그물철망의 안전간격(mm)



<그림 1> 착탈식 그물철망 상세도

5.2 투입구 내면에 가이드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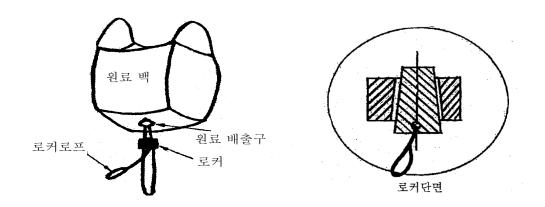
운반물의 특성 및 투입구의 구조상 투입구에 그물철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투입구 내면에 가이드를 2개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 하는 스크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.<그림 2>



<그림 2> 내면가이드 설치도

5.3 원료백 배출구의 묶음로프에 플라스틱 로커 설치

원료백을 투입구에 올려 놓은 후 배출구의 묶음로프를 칼로 절단하지 않고 묶음로프를 해체하여 원료를 투입구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배출구 묶음로프에로커를 설치하여 1회 조작으로 묶음로프가 자동 해체되도록 <그림 3>과 같이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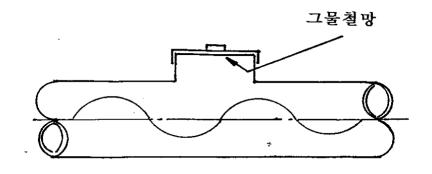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3> 원료백 배출구의 묶음로프에 로커설치 상세도

6. 스크루 컨베이어 트로프의 방호조치

6.1 트로프 점검구에 그물철망 설치

작업자의 신체가 트로프 내부에서 회전하는 스크루에 접촉되지 않도록 점검 구에 그물철망을 설치한다. <그림 4>



<그림 4> 그물철망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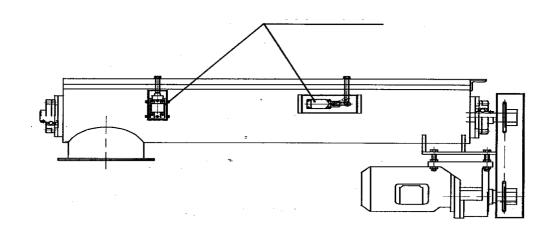
6.2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에 연동장치 설치

리밋스위치

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닫아야 컨베이어의 운전이 가능하고 트로프 상부 방호 덮개를 개방할 경우 조작회로가 차단되어 컨베이어의 운전이 자동정지되도 록 연동장치를 설치하며, 연동장치는 컨베이어의 형식 및 작업여건에 따라 아 래의 연동장치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.

6.2.1 덮개별 연동장치 설치

(1)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1~3개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.<그림 5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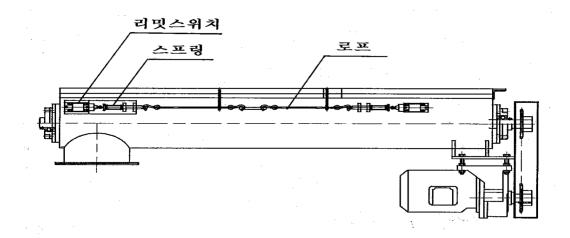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5>덮개별 연동장치 설치도

- (2) 덮개별 연동장치는 트로프 덮개별로 연동장치를 설치하는 구조로 덮개별 연동 장치는 AND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(3) 연동장치의 리밋 스위치는 작업자가 임의로 기능을 무효화 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.

6.2.2 잠금용 로프식 연동장치

(1)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4개 이상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.<그림 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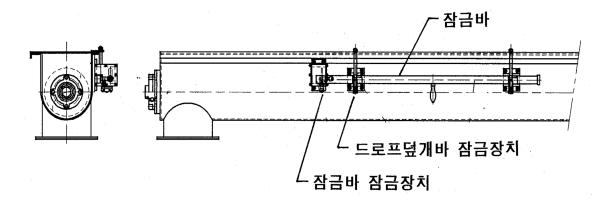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6> 잠금용 로프식 연동장치 설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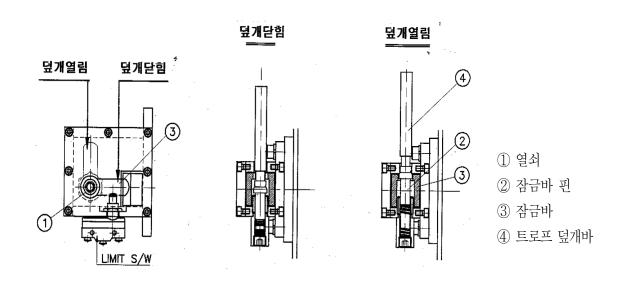
- (2) 잠금용 로프식 연동장치는 다수로 분할된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1개의 리밋스위치와 잠금용 로프로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연동시킬 수 있는 구조로써,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에서 잠금용 로프를 분리할 때에는 컨베이어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한다.
- (3) 잠금 로프의 재질과 크기는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설치한다.

6.2.3 열쇠형 잠금바(Bar) 연동장치

- (1)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4개 이상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<그림 7>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.
- (2) 열쇠형 잠금바 연동장치는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이중 잠금하는 연동장치로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전부 닫혀야 1차로 기계식 잠금장치가 작동되고, 2차로 기계식 잠금바를 열쇠로 잠금 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열쇠를 사용해야만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열 수 있도록 한다.



< 조립도 >



"잠금바 잠금장치"상세도 "트로프 덮개바 잠금장치"상세도

<그림 7> 열쇠형 잠금바 연동장치 설치도

7. 점검 · 정비작업 시 타작업자의 설비가동 방지조치

(1) 조작패널의 기동스위치를 키타입으로 설치하여 트로프 내부의 이물질 제 거, 점검·정비 등의 작업 시 기동스위치 조작키를 작업자가 뽑아서 휴

M - 132 - 2012

대토록 하여 타작업자에 의한 조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.

- (2) '정비중', '보수중', '전원투입금지'등의 표지판을 조작패널의 스크루 기동스 위치에 부착한다.
- (3) 트로프 내부에 내장된 중간베어링 급유 시 덮개를 열지 않고 급유할 수 있도록 급유구(동관)를 외부로 설치한다.
- (4) 베어링의 급유구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급유가 어려운 위치의 베어링은 무급유 베어링으로 설치한다.
- (5) 추락의 위험이 있는 스크루 컨베이어의 원료투입구 등의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 (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 cm 이상 120 cm 이하에 설치하고,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)을 설치한다.
 - (6) 스크루 컨베이어의 체인, V-벨트 등 동력전달부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, 커플링에 설치된 연결볼트는 묻힘형으로 체결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한다.

8. 점검 및 관리

- 8.1 점검항목
- 8.1.1 전동기 및 동력전달장치
 - (1) 전동기 과열여부
 - (2) 주변에 오일 누유 여부
 - (3) 체인, 커플링 정상작동 여부
 - (4) 이상 소음유무

M - 132 - 2012

8.1.2 컨베이어 장치

- (1) 컨베이어의 손상여부
- (2) 스크루의 회전상태 이상 유무
- (3) 이물질의 부착여부
- (4) 이상 소음 유무

8.1.3 전기장치

- (1) 전기장치의 손상여부
- (2) 전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
- (3) 금속부의 접지여부
- (4) 전선 피복의 정상영부
- (5) 전선의 연결상태 정상여부

8.1.4 안전장치

- (1) 작업자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방호커버의 설치여부
- (2) 트로프 방호덮개의 연동장치 정상작동여부
- (3) 비상정지스위치의 조작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비상정지장치의 정상작동여부

8.2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

- (1) 일상점검은 담당 및 운전부서에서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 담당부서, 정비부서 등에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.
- (2) 일상점검결과는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